

제2902호  
2022. 2.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10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공 고

제2022-86호 : 공인(청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6

제2022-88호 :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7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06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
  - 법 제92조의2 자동차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 확대
  - 법 제183조제2항 지방세 감면 결정 및 통지 문구 삭제 반영
  - 영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반영

### 2. 주요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의2)
- 자동차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10조)
-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안 제11조)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변경(안 제13조제2항)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세 감면 관련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로 한다.

별지 서식 전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면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차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차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 ----- 250원 2. ----- 600원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 건축물 및 주택----- -----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갈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세 감면 관련 사항-----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86호

**공인(청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2.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22. 2. 9.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 등록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및 서체	비 고
신 조	중구청장의인 세무민원전용(종직인)		2.4 × 2.4 한글서체	

● 폐기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및 서체	비 고
폐 기	중구청장의인 세무민원전용(종직인)		2.1 × 2.1 한글서체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88호

###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1.12.09 ~ 12.23
- 공람장소 : 중구 도심재생과,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성동구 왕십리2동 주민센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기간, 장소

- 공개기간 : 2022.02.09.~02.23(14일간)
- 공개장소 : 중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의견 : 환경과 관련된 주민의견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